

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3. 10. 14 규칙 제715호
일부개정 2014. 6. 9 규칙 제744호
일부개정 2018. 9. 28 규칙 제93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 6. 9>

제2조 삭제 <2018. 9. 28>

제3조(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등) ① 「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·의결서를 작성하여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6. 9, 2018. 9. 28>

②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제목개정 2018. 9. 28]

제4조(보조금 신청)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6. 9, 2018. 9. 28>

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,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6. 9, 2018. 9. 28>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조금의 지급방법)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부터 3년 내의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9. 28>

②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(투자) 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9. 28>

제6조(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)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9. 28>

1. 사업계획의 추진상황
2. 보조금 등의 적정 사용 여부
3. 보조금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
4. 그 밖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, 시정,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6. 9, 2018. 9. 28>

[중전 제6조는 삭제, 제7조에서 이동 2018. 9. 28]

[제목개정 2018. 9. 28]

제7조(보조금의 정산)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9. 28]

제8조 삭제 <2018. 9. 28>

제9조(포상금의 신청) ①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 포상금(이하 “포상금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6.

9)

② 시장은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나 실적 등에 관한 현장실사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포상금 신청을 위한 기업유치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유치기업이 기존 건축물에 이전하는 경우는 법인등기 및 공장등록 신고 이전일

2.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건축물 착공일

3.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외국투자자본 계좌입금일

④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,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0조(포상금의 지급) ① 조례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,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포상금은 다음 해에 지급한다.
<개정 2014. 6. 9, 2018. 9. 28>

②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한 경우에는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실적만 인정한다. <개정 2014. 6. 9, 2018. 9. 28>

제11조(포상금 지급 제외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4. 6. 9>

1. 해당 기업 임직원 및 친인척 또는 기업 자의로 이전하는 경우

2. 부동산 관련(분양업, 중개업 등) 종사자에 의한 경우

3. 지식산업센터 내 유치 시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한 경우

4. 신규 분양 5년 이내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경우

5. 임대 입주하는 경우

6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

제12조(인사상 우대기준)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 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점 이내의

가점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및 「지방공무원
평정규칙」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말한다)을 부여 할 수 있다.
이 경우 가점 부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한다. <개정 2018. 9. 28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조례 제25조의
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8. 9. 28>

[본조신설 2014. 6. 9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6. 9 규칙 제74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9. 28 규칙 제93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기업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(제10조제2항 관련)

【포상금 지급기준 - 민간인】

| 투자금액(매출액) 상시고용인원 | 지급기준율 | 상한액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20억원~100억원미만 30명 이상 | 투자금액× 0.0005 | 500만원 |
| 100억원~300억원미만 50명 이상 | 500만원+{(투자금액-100억원)×0.0004} | 1,300만원 |
| 300억원~500억원미만 60명 이상 | 1,300만원+{(투자금액-300억원)×0.0003} | 1,900만원 |
| 500억원~1,000억원미만 70명 이상 | 1,900만원+{(투자금액-500억원)×0.0002} | 2,900만원 |
| 1,000억원 이상 100명 이상 | 2,900만원+{(투자금액-1,000억원)×0.0001} | 3,000만원 |
| 예) 개인이 250억원 투자유치를 한 경우 ☞ 500만원 +{(250억원 - 100억원) × 0.0004} = 1,100만원 | | |

※ 투자금액(매출액) 기준과 상시고용인원 기준 중 포상금액이 큰 것을 적용한다.

【포상금 지급기준 - 공무원】

| 투자금액(매출액) 상시고용인원 | 지급기준율 | 상한액 | 인사우대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20억원~100억원미만 30명 이상 | 투자금액× 0.0002 | 200만원 | 실적가점 |
| 100억원~300억원미만 50명 이상 | 200만원+{(투자금액-100억원)×0.0001} | 400만원 | |
| 300억원~500억원미만 60명 이상 | 400만원+{(투자금액-300억원)×0.0001} | 600만원 | |
| 500억원~1,000억원미만 70명 이상 | 600만원+{(투자금액-500억원)×0.0001} | 800만원 | |
| 1,000억원 이상 100명 이상 | 800만원+{(투자금액-1,000억원)×0.0001} | 1,000만원 | |
| 예) 개인이 250억원 투자유치를 한 경우 ☞ 200만원 + {(250억원 - 1,000억원) × 0.0001} = 350만원 | | | |

※ 투자금액(매출액) 기준과 상시고용인원 기준 중 포상금액이 큰 것을 적용한다.

【기여도에 따른 포상금 적용 기준】

| 적 용 기 준 | 적용률 |
|---|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자 발굴, 정보입수, 입지선정,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설립 등 투자유치까지,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,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| 100%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자 발굴, 정보입수, 입지선정,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| 70%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자 발굴,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| 50%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자, 정보입수 후 타 기관·단체, 부서로 이관 추진 | 30% |

[별지 제7호서식]

사 업(투자) 계 획 서

1. 일반현황

| 회 사 명 | 대표자 | 소 재 지 | | | | 법인등록번호 | |
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|---------|
| | | | | | | | |
| 업 종 | 생산품 | 종업원수 | 자산규모(억원) | | | | 투 자 규 모 |
| | | | 계 | 동산 | 부동산 | 부 채 | |
| | | | | | | | |

2. 부지 소요내역

| 대지면적 (㎡) | 건 축 계 획 면 적 (㎡)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--|
| | 계 | 연구개발시설 | 생산시설 | 연수동 | 숙소동 | 기타부대시설 |
| | | | | | | |

3. 사업비 투자계획

| 구 분 | 금 액(단위:백만원)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계 | | |
| 토지매입비 | | |
| 건축비 | | |
| 건물취득비 | | |
| 임 대 료 | | |

4. 활용계획

[뒷면]

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구분/년도 | 0000년 | 0000년 | 0000년 | 0000년 | 0000년 |
| 계 | | | | | |
| 토지매입비 | | | | | |
| 건축비 | | | | | |
| 건물취득비 | | | | | |
| 임대료 | | | | | |

5. 기업체 연혁(기업체의 설립, 사업내용,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재)

| 년 월 일 | 주 요 내 용 |
|-------|---------|
| | |

6. 투자이행계획(구체적으로 기재)

[별지 제8호서식]

투자 이행각서

○○(주)는 ○○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용인시 ○○(동,읍,면) ○○리 ○○번지 일원에 투자할 것이며,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「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및 「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.

- 소 재 지 :
- 투자기간 :
- 투자이행사항
 - 투 자 액 :
 - 고 용 인 원 :

년 월 일

(각서인)

(확인인)

주 소 :

주 소 : 용인시

상 호 :

직 위 :

대표자 : (인)

성 명 : (인)

용인시장 귀하

